

감염병 웹통계 <http://stat.cdc.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

Guidelines for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entinel Surveillance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안내

Guidelines for
Acute Respiratory Infection
Sentinel Surveillance



파일 다운로드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인 쇄 : 2013년 12월 ■ 발 행 : 2013년 12월
- 편집 및 배부 : 질병관리본부
- 담당 부서 : 감염병감시과(전화 : 043-719-7177/ 팩스 : 043-719-7188, 7189)
 결핵호흡기세균과(전화 : 043-719-8314/ 팩스 : 043-719-8349)

1 표본감시배경 및 목적

- 1 표본감시의 배경 및 목적 03
- 2 표본감시 기관의 지정 04
- 3 표본감시 기관의 역할 05
- 4 표본감시 신고서 16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주요한 원인은 호흡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균감염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원체감염에 의한 임상증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임상소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실험실적인 진단 없이 대증치료에 의존하거나 증상완화 및 2차 감염의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는 원인 병원체 분석 및 국내 발생 현황과 양상을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표본감시 기관의 지정

- +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인구 50만명당 1개소)를 지정 대상으로 합니다.
- +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 지정기준에 의거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는「표본감시기관 지정서」를 보내드립니다.
- +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신고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과의 자료를 취합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합니다.
 - 신고담당자 : 의사, 병원감염관리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원무과장 등
- + 병원체 검사의뢰시 1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표본감시 기관의 역할

1. 신고를 위한 환례정의

〈환자〉

급성호흡기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인후도말, 비인후도말, 비강흡입물, 비인두흡입물, 객담, 폐포 세척액 등 호흡기 검체)에서 해당 병원체의 배양 양성 또는 독소 양성 또는 유전자 검출

※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종류

구분	종류
세균	폐렴알균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Adenovirus infection)

(1) 정의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및 직접 접촉
- 잠복기 : 2~14일
- 임상증상 : 발열성 급성 인후염, 인두염, 급성 호흡기질환 및 폐렴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나.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Human bocavirus infection)**(1) 정의**

사람 보카바이러스(human boc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1~4일
- 임상증상 : 발열,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감염증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보카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Parainfluenza virus infection)**(1) 정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parainfluenz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2~6일
- 임상증상 : 발열성 코감기,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 질환 및 폐렴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Respiratory syncytial virus infection)

(1) 정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4~5일
- 임상증상 : 급성 호흡기질환 및 어린이와 신생아의 하부호흡기감염증 (모세기관지염, 폐렴)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 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마. 리노바이러스 감염증(Rhinovirus infection)

(1) 정의

사람 리노바이러스(human rhin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1~4일
- 임상증상 :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리노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리노바이러스 특이유전자 검출

바.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Human metapneumovirus infection)

(1) 정의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human metapneumo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4~5일
- 임상증상 : 급성 호흡기질환 및 어린이와 신생아의 하부호흡기감염증 (모세기관지염, 폐렴)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사.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Human coronavirus infection)**(1) 정의**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uman corona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2~3일
- 임상증상 : 발열,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아. 폐렴알균 감염증(Pneumococcal disease)**(1) 정의**

폐렴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보균자 또는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1~3일
- 임상증상 : 기침, 발열, 오한, 호흡곤란 등의 전형적인 급성호흡기 증상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폐렴알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폐렴알균 분리

자.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Mycoplasma infection)**(1) 정의**

마이코플라스마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7~10일
- 임상증상 : 발열, 기침, 두통, 오한 등을 동반한 급성호흡기감염 증상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Mycoplasma pneumoniae 균 검출 또는 특이유전자 검출

차. 클라미디아균 감염증(Chlamydia infection)**(1) 정의**

Chlamydia pneumoniae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2) 임상적 특성

- 전파경로 : 환자로부터 비말 전파

- 잠복기 : 7~10일

임상증상 : 발열, 기침, 두통, 오한등을 동반한 급성호흡기감염 증상

(3)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클라미디아균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Chlamydia pneumoniae균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2. 표본감시 신고

구 분	신고 주기	신고일	신고 기간	신고 내용	신고 방법
주간 보고	1주	매주 화요일까지	연중	전 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수	팩스

가. 신고내용

1) 해당기간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수

- 해당 표본감시기간 동안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수를 기재합니다.

2) 자료 수집 범위

- 전주 일요일~토요일까지 외래/응급실/입원환자 중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수 수집

나. 신고방법

전주 일요일~토요일까지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까지 담당부서인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감시과로 팩스 신고합니다.

(전화: 043-719-7177, 팩스: 043-719-7188,7189)

3. 검사의뢰방법

- 마이코플라스마균과 클라미디아균 등 호흡기세균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결핵·호흡기 세균과(043-719-8314)에 문의한 후 검체시험의뢰서(부록 2)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검체 접수실(043-719-8026)에 검사 접수합니다.

- 검체채취 : Nasopharyngeal/Oropharyngeal/Throat swab or aspirates, Broncheoalveolar lavage, Tracheal aspirates, Sputum 등

- 검체수송 : 채취된 검체는 즉시 수송하고, sputum과 aspirates의 경우 최소 2ml을 멸균된 밀봉용기에 담아 냉장수송하고, swab의 경우는 rayon, polyester, Dacron swab을 사용하여 채취하고 VTM 혹은 M4 배지(부득이 할 경우 멸균된 saline 가능)에 담아 냉장 수송

MEMO

MEMO